

옛 大學의 發達史(下)；朝鮮時代 —우리 옛 大學의 發達史와 風俗誌(2)—

丁淳陸
(嶺南大 教育學科)

우리 옛 大學의 發達史와 風俗誌

1. 옛 大學의 發達史(上)；高麗 이전

- 1) 고구려의 太學
- 2) 백제의 博士 제도
- 3) 신라의 國學
- 4) 고려의 國子監

2. 옛 大學의 發達史(下)；朝鮮時代

- 1) 國立大學：成均館
- 2) 民立大學：精舍와 書院

3. 옛 大學의 風俗誌

- 1) 成均館(學令／齋會／捲堂·空館·儒蔬／圓點／闕戲／調廟…)
- 2) 書院(講／講儀／講會／儒會／評價／師長／居接·夏課…)

1. 國立大學；成均館

1) 관학 아카데미즘

조선의 건국은 禪王의 형식을 빌은 高麗朝의 연장 선상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文物章典의 왕조적 특색이 왕조의 교체와 함께 일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 건국의 章典이 차츰 갖추어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모든 教學體制가 관학 아카데미즘으로 이

글리게 되었으며 국가는 인재 양성과 인재 선발권을 함께 장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선 시대의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15세기 학교 교육은 階梯學校이거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한 講習學校는 아니다. 성균관은 과거 응시자의 최종 학교는 아니었으며 四學이나 鄉校 역시 中間學校가 아니다. 이 점 明·清의 과거제가 응시 자격을 학교의 학생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학교 제도를 포괄하였던 것과는 비교된다.

신 왕조 초기에 절실히 요청되었던 왕권의 강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관학의 육성 정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李芳遠 일파의 군사 투태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麗末에 도입된 성리학을 그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채용하고 이를 정당화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계의 '잘' (통치권)과 鄭道傳의 '붓' (이데올로기)의 힘에 의하여 조선 왕조는 창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성계는 1392년 7월 17일 개성 수창궁에서 즉위하였으며, 11일 뒤인 28일에 〈即位敎書〉를 반포하였다.

이는 일종의 教育詔書이다. 그 요지는 첫째로

文武兩科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 둘째로 고려 시대 과거 제도의 폐풍이던 座主門生制度와 國子監試를 없앤다. 세째로 官學을 적극 육성하여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킨다. 네째로 化民成俗의 기풍을 전작시킨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국가 교육 정책은 조선 왕조가 실질적인 문무 양반 체제의 기반 아래 관료의 需給源을 제도 교육권 안으로 끌어 두면서 양반 관료의 선발권을 국왕 중심 체제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시책은 정치와 교육의 이념이 차츰 주자학적 이데올로기로 이론화·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2) 成均館의 제도 정비

서울 천도 이후 성균관이 창건된 것은 태조 7년 7월이다. 이로부터 성균관은 조선 왕조 5백년간의 최고 학부로 유지 존속되었으며, 부속 학교인 四學이 설치되고 學田과 노비를 갖추었으며 學制와 교육 방법을 정비하는 동시에 道賈庫의 재원이 마련되었다.

조선 왕조의 교육 정책은 成文法(「經國大典」 등)으로 실시되었으나, 대부분 先王에 의한 成憲, 또는 국왕의 判文이나 教·傳(旨)에 주로 의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정책도 국왕의 惠制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국왕 또한 양반 관료 체제의 首長이기 때문에 上疏·劄·經筵·諫諍·史筆 등을 통하여 대부분 양반 관료의 수중에서 입안되고 집행되었다.

이성계가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혁파한 것이 '座主門生制度'이다. 이는 私學 아카데미즘을 관학화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고려 4대 光宗이 과거제를 창설한 까닭은 지방 호족 출신의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국가 경비를 과다하게 관학에 투입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귀족들은 私學을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마침내 과거를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고려 중기 이후에 나타난 崔沖徒를 비롯한 私學 十二徒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학 십이도는 교육을 폐쇄적으로, 과거를 독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강력한 과거 준비 교육기관이 되었으며, 과거에 응시하려는 귀족 자제들

은 유력한 시험관(知貢舉)이 경영하는 私學에서 딸과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座主(恩門: 지금의)와 門生 관계는 마치 부자 관계처럼 엄격히 밀착되었으며 徒中과 徒中간에 멋대로 이적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것은 文臣貴族들이 學閥과 黨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조의 즉위 교서가 있었으나 이러한 좌주 문생 제도는 쉽사리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신종 사대부(집권 이데올로그(ideologue))들의 점묘한 반대로 태종 13년(1411)에 마침내 貢舉制와 함께 철폐되었다. 태조의 故書가 있고 나서 9년 뒤의 일이다.

조선 초기 成均館은 국가 교육 정책의 집행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成均正錄所'와 '成均長貳所'의 운영이 그것이다. 이들은 조선 초기의 과거의 실무를 담당하던 기관이다. 正錄所는 성균관의 下位學官(學正·學錄·學諭)으로 구성하여 과거 응시자들의 예비 심사를 하던 곳이고 長貳所는 大司成·祭酒(좌주) 등으로 구성된 고위 학관들의 모임이다. 大司成은 국립 유학대학의 총장이면서 성균관 生員試의 총시판이 되는 것이 관례였다.

1392년 7월 28일 태조는 즉위 교서를 내리는 동시에 새 왕조의 官制를 공포하였는데, 국가 최고 회의인 都評議使司와 최고 행정 기관인 門下府를 비롯하여 中樞院, 三司, 司憲府, 經筵官, 開城府, 六曹 등 모든 제도는 고려의 것을 그대로 습용하였다. 禮曹는 '掌科舉'하고 成均館은 '掌學校肄業'한다고 하여 그 상하 소속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조선 건국 당시의 성균관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大司成	1명	正3品	祭酒	1명	從3品	
樂	正2명	正4品	講	1명	正5品	
典	簿	1명	從5品	博士	1명	正5品
諫諍	博士	7명	從7品	進德博士	2명	正7品
學	正2명	正7品	學錄	2명	正7品	
直	學	2명	從8品	學諭	4명	從8品
書	吏	2명	9品	去官	등	

3) 定員 및 科試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2 배 명이었다. 生員試(100명)과 進士試(100명)에 합격한 뒤(조선 초기에는 전사시는 없었고 생원시만 있었다) 성균관에서 만 3 배 일을 居館하여 四點 3 배을 따야 文科 初試(館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점 3 배 결과 정원 2 배 명은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세종 때에 이미 정원(定額)이 미달되었는데 이것은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도 과거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과 응시 자격을 生員(뒤에 전사까지)일 것과 원점 3 배를 요구하자 양반 자제들은 武科에 응시하거나 忠順衛·南行(남향: 蔭職)으로 빠지기도 하였다. 임란 이후에는 성균관 관생이 78명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4) 文廟釋奠과 學則

성균관의 두 가지 기능은 교육 기능과 祭享 기능이다. 태조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1392. 8. 8.) 謂文春秋官大學士 閔齋에게 명하여 문묘에서 穩飮을 올리도록 한 뒤로 ‘謁聖·取士’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典禮가 되었다. 국왕이 성균관에 나아가 과거를 보았는데 이것이 謩聖試이다. 태종 14년(1414)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一場으로 합격이 결정된다. 일성시는 相避制(試官과 가까운 친척들은 응시할 수 없게 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부정이 많았다.

성균관은 廟學一體이므로 〈學記〉에는 “베달 초에 제생은 冠帶를 갖추어 문묘의 뜰에 나아가 일성하고 四拜禮를 행한다”고 하였다. 성균관의 學則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國學事宜〉: 禮曹에서 올린 국립대학 육성방안(5조)이다. ① 국립대학의 유지 재단인 養賢庫에 전임(注簿·博士·學諭) 1 명씩을 兼差하여 당번으로 시무케 한다. ② 監膳 담당의 生員과 이를 參佐하는 注簿 1 명을 두어 식당 관리를 책임지게 한다. ③ 계절에 따른(熱·寒·溫·濕) 환경에 각별히 유의한다. ④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생의 성적을 예조에 月報하고 考察에 참고한다. ⑤ 명망이 있는 ‘兼大司成’으로 하여금 성균관에 전임 근무하도록 하여 학문을

원장한다(※ 3品 이상의 대신으로 학문과 덕행이 높은 사람을 뽑아서 成均館知事·同知司·兼大司成에 임명하였다. 세종 시대에는 卞季良·許稠와 같은 重臣이 知事에 임명되고 申祥·金鉤·金洋·金末과 같은 文臣을 전임 교수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世宗 文治時代의 인재가 그들 문하에서 다수 배출된 것이다).

• 〈九齋學規〉: 조선 초기에 文科初試 講經法이 폐지되었다. 이에 성균관 학생들은 經學에 힘을 쓰지 않고 文章 공부만 하게 되자, 세조 6년 9월에 〈九齋學規〉(講經法)를 제정하여 經書教育을 강화하였다. 居齋生들은 고려 시대에 이미 시행하였던 것처럼 ‘大學齋’로부터 ‘周易齋’에 이르는 9 개의 과정으로 分班하고 달마다 臨諱의 감독 아래 예조와 성균관 당상관이 考講하였다. 하나의 ‘제’를 마친 자는 다음 과정으로 升齋하여 9 齋를 다 마쳐야 東西班牙의 관직에 서용하는 동시에 式年試(정식 과거 시행 연도 子·午·卯·酉년이 든 해) 때에 初試를 면제하고 會試에 곧장 나가도록 하였다. 세조 8년에는 朔望朝會시에 추첨에 의하여 성균관 학생 3~4명을 뽑아 국왕이 친히 考講하고 그 성적(分數)을 문과 초시의 성적에 합산하였다. 이때 교제로 訓民正音·東國正韻과 같은 책을 課하게 한 것은 고시에 있어서 전일보한 조처였다.

• 〈勸學節目〉: 성종 때(24년 5월) 도승지 曹偉가 품계하여 의정한 节目이다. 이는 유생들이 성균관 입학을 기피하는 폐단을 막고자 四點과 陳省(수령이 밀급한 결석 사유서)을 규정한 내용이다. ‘四點’에 관한 것으로는 성균관에 居齋하는 유생의 출결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제 유생이 아침 저녁으로 식당에 들 때 접호하여 到記(출석부)에 찍는다. 조석 양시를 1 점으로 하여 3 배 점이 차면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이 节目에서는 1朔에 10일 이상 청강을 하고 3旬에 製述을 한 번하여 次等 이상으로 합격한 자는 원점을 주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원점을 반감시켰다. 이는 거관하는 생원 전사들이 日講을 기피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陳省難辨’이란 수양 부모나 시양 부모의 老病을 사유로 陳省를 받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기에, 그 진부를 가릴 수 없다는 뜻이다. 수령의 陳省

이 있으면 유고 결석으로 인정하여 원점은 주었기 때문에 居館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수령과 짜고 이러한 거짓 陳省을 받아오는 예가 많았다. 따라서 수양이나 시양 부모의 老病 陳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5) 성적 평가 및 講經과 製述

성균관의 성적 평가는 「經國大典」과 「文科講經節目」(「世宗實錄」 권 103, 세종 26년 2월 乙丑조)을 준용하였다.

• 試官에 따라 講經을 출제할 때, 학생의 풀이가 자신의 것과 다르다고 하여 '不通'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의 풀이가 통한다는 다른 試官의 衆議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 講經 뒤의 종합 평가는 '粗通·略通·通·大通'의 案數(체점 투표)로 결정하고 案數가 같은 경우에는 從下桂으로 시행한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通·粗·略·不'의 4 단계로 나누어 通은 2分, 略은 1分, 粗는 0.5로 계산한다. 따라서 四書三經을 모두 '粗' 이상을 받으면 '3.5'分 이상이 된다.

성균관의 교육은 유학의 기본 교재인 四書(大學·論語·孟子·中庸)와 五經(禮記·春秋·詩·書·易)이 주된 교과목이다. 그래서 九齋라고 한다. 大學齋에서 '周易齋'에 이르는 과정을 각각 마치는 동안 이를 과정 이수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예조에 보고하고 성균관에 비치한다.

성균관의 分齋教育은 물론 四學과 지방 향교 교육의 기본 교재 역시 四書五經이었다. 그리고 국초의 과거 시험은 「講經」이 중시되고 「製述」은 등한시 되었다. 강경과 제술은 과거의 두 가지 형식이다. 따라서 그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성균관을 비롯한 모든 교육 체계의 교육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다. 오늘날 대학 입시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지배하는 이치와 같다. 初試의 경우 강경은 生員試라 하고 제술은 進士試라 하였지만 전국초에는 講經派가 득세하여 생원시만 시행되었다. 講經派와 製述派의 갈등은 經學家와 文章家의 의견 차이만이 아니라 士林派와 훈구파간의 권력 기반 조성과 관련된다. 즉 태조 원년(1392)부터 11년간 講經으로 科試하다가(태조의 〈즉위교서〉에 '강경'으로 하라고

하였으나 첫 式年試(1393)에는 '제술'로 하였고, 그 다음 식년(1396)부터 '강경'으로 함) 태종 7년에는 제술로 바뀌어 10년을 계속하고, 동 17년(1417)에 다시 강경으로 되돌아가 8년간 실시하였고, 세종 7년(1425)에 제술로, 동 24년에 또 다시 강경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동 32년(1450)까지 계속되었다. 講經派와 製述派의 주장은 각기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製述派의 주장〉 : (강경으로 할 경우)

- ① 시험관의 私情으로 불공정한 체점이 되기 쉽다.
 - ② 臨文考講의 경우 시험관의 면전에서 강독을 하므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
 - ③ 주관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체점 기준이 모호하다.
 - ④ 경서의 句讀나 訓詁의 암송을 위주로 하므로 유학의 깊은 연구나 문장 공부에 힘쓰지 않게 된다.
 - ⑤ 외우기에 능한 사람만이 급제되므로 문장에 능한 사람은 탈락된다.
 - ⑥ 시험 기간이 한 달씩 걸리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다.
 - ⑦ 太祖와 太宗의 '成憲'(태조 2년 제술)·'遵法'(태종 7~16년간의 제술)에 위배된다.
- 〈講經派의 주장〉 : (제술로 할 경우)
- ① 유생들이 경서를 읽지 않고 모범 답인 「抄集」만을 읽게 된다.
 - ② 문장의 바탕이 되는 經學 공부를 소홀히 하여 마침내 유학의 末枝인 詞章이나 詩文에만 흐르게 된다.
 - ③ 太祖의 '成憲'(즉위 교서)에 어긋난다.
- 講經의 체점 방식은 〈표 1〉과 같다(〈講經節目〉 세종 26년(1444) 제정).

〈표 1〉 講經의 체점 방식

基準	詳點	粗通	略通	通	大通
句讀·訓釋	不誤	熟	能明白	曉	釋
講論·大旨	不失一章大旨	未融	無疑	曉	釋
義理·旨趣	不失一章大旨	未融	開析	曉	釋
連上·接下	不失一章大旨	未融	開析	融貫一書大旨	

- 製述의 채점 방식은 옆의 〈표 2〉와 같다(‘文科三場分數’에 의함).

‘四書疑’ 1편과 ‘五經義’ 1편씩 두 문제의 답안을 써야 하는데, 수험생은 이 두 문제 가운데 자신이 더 있는 문제를 먼저 선택하고 (이를 ‘上編’ 또는 ‘原編’이라 한다) 다음에 나머지 문제의 답안을 쓰게 하였다(이를 ‘下編’ 또는 ‘轉編’이라 한다). 상·하편을 모두 작성하는 것을 ‘成編’이라 하는데 성편하지 못하면 실격이다. 채점 방법은 ‘居首者’부터 ‘下下’까지 10등급이다. 10등급의 分數는 〈표 2〉와 같다.

〈표 2〉 製述의 채점 방식

等級	義	疑	計
居首者	5分	5分	10分
上 上	4.5	4.5	9分
上 中	4	4	8
上 下	3.5	3.5	7
中 上(二上)	3	3	6
中 中(二中)	2.5	2.5	5
中 下(二下)	2	2	4
下 上(三上)	1.5	1.5	3
下 中(三中)	1	1	2
下 下(三下)	0	0	0

〈참 고〉

〈표 3〉 科舉之法의 三場分數之法(太宗 十七年, 1417), 祿曹啓

初 場			中 場			終 場		
大 通	3分 5厘		中 之 上	10分		上 之 上	13分 5厘	
略 通	2		中 之 中	12		上 之 中	12	
粗 通	1		中 之 下	8		上 之 下	11	
	5		下 之 上	7		中 之 上	10	
			下 之 中	6		中 之 中	9	
			下 之 下	5		中 之 下	8	
						下 之 上	7	
						下 之 中	6	
						下 之 下	5	

〈표 4〉 科舉 講經程式의 三場分數法(世宗 二十五年, 1443), 祿曹呈狀·議政府啓

初 場			中 場			終 場		
四書五經 (全 部)	大通 通	31分 5厘 18		上 之 上	18分 16		上 之 上	18分 16
	略通 粗通	9 4	二篇 (모두)	上 之 中 上 之 下	16 14		上 之 中 上 之 下	16 14
四書四經 (全 部)	大通 通	28 16		中 之 上 中 之 中 中 之 下	12 10 8		中 之 上 中 之 中 中 之 下	12 10 8
	略通 粗通	8 4		下 之 上 下 之 中 下 之 下	6 4 2		下 之 上 下 之 中 下 之 下	6 4 2
四書三經 (全 部)	大通 通	24 5 14						
	略通 粗通	7 3 5						

6) 부속학교 : 四學

四學은 성균관의 예비 학교이다. 이들 학생이 (나이가 차면) 升補試를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였다. 四學이란 도성 안에 中·東·西·南學을 합쳐 부른 말이다. 태종 11년에 창설되었다고 하나(太學志), 고려 시대 五部學堂에 기원한다. 「世宗實錄」에 의하면(4년 12월) “먼저 南部學堂을 세우고 그 教授官·訓導官을 五部儒學教授官·訓導官이라고 불렀다. 이때에 中部學堂이 설립되었으므로 처음으로 따로 教授官·訓導官을 두었다. 東西北 三部學堂은 아직 建立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성균관의 교수는 성균관 학생만 가르치는 것 이 아니라, 부속 학교인 四學의 教授·訓導를 겸하였다. 뒤에 전임으로 교수와 훈도 각 2명씩 을 배정하였다.

7) 유지 재단(養賢庫)과 노비

태조는 고려의 양현고 제도를 계승하여 새 왕 조의 직제를 공포할 때(1년 7월) 양현고에 判官 2명을 두어 관장하게 하였다. 그 뒤 태종 12년에 성균관 직제를 제정하면서 養賢庫의 判官 을 고쳐 使·丞·錄事 각 1명씩 두었다. 使는 注簿, 丞은 博士, 錄事는 學諭가 겸임토록 하였다. 조선 초기의 양현고 재산은 토지가 1천 結이고 노비가 3백 구였으며 司宰監을 두어 魚基 1~2처에서 나오는 黃角·미역·해산물을 공납하도록 하였다.

養賢庫의 노비는 洋奴라고 한다. 卞季良의 〈文廟碑文〉에 의하면 성균관 노비는 조선 초기에 약 3백 명이었다. 이는 고려 아래의 公奴婢의 자손과 고려 충렬왕 때 安珦이 기증한 私奴婢의 후예들이다. 그 뒤 역대의 임금(세종·문종·성종 등)이 기회있을 때마다 100구 또는 10구씩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 노비는 身役이나 身貢을 바쳤다. 身役을 바치는 자는 洋奴이고 身貢을 바치는 자는 外居奴婢이다. 성균관의 노비가 차츰 불어나자 다른 곳으로 이속시키려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그때마다 성균관에서는 “先賢(文成公 安珦)이 기증한 뜻과 어긋난다” 하여 환속시켜 달라고 하였다.

양현고의 재정 사정은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

여 그리 풍족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조선 초기에는 양현고의 미국으로 五部學生들의 점심까지 공제하였으나 태종 17년 예조 판서 卞季良의 건의로 이를 豊儲倉으로 이관하였는데 이는 성균관의 收稅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이 제정 고갈로 한때 휴학하는 사태도 있었으며 이때마다 왕이 내탕금을 하사하기도 하였는데, 세조 7년에는 양현고에 쌀이 떨어졌으므로 30석을 하사하였으나 姑息之計에 불과하였다. 마침내 세조 11년에는 유서 깊은 양현고가 폐지되고 풍자창으로 하여금 유생을 공제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에 성균관 관원과 유생들은 여러 번 상소를 올려 양현고의 復設을 주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성종 14년경에 가서야 양현고의 이름이 되살아났다.

성균관 노비 환속에 관한 「성종실록」의 기록(권 67, 7년 5월과 권 70, 7년 8월)을 보면 당시 권세가들의 學田과 노비에 대한 침탈상을 살필 수 있다. 翔殿功臣 驪山君 閔發이 賦牌奴로 성균관 노비 2인을 받았다. 이에 성균관 유생들이 ‘閔發一武耳’라고 하면서 극렬한 비난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閔發은 권세를 빙자하고 노비를 돌려주지 않았으며 金順命이 刑決事が 되어서 賦牌는 왕명이므로 한번 내려준 노비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掌隸院에 提訴하였는데, 孫舜孝가 다시 판결사가 되고 나서는 先賢이 기증한 노비를 뺏을 수 없다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그 뒤 다시 金克杻가 판결사가 되자 原審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동안 성균관 유생 尹續宗 등이 이에 불복하는 상소를 올려 刑決事 金克杻를 탄핵하였다. 이처럼 권세가들의 성균관 학전·노비의 침탈에 대하여 성균관 유생들이 대의명분론으로 맞섰으나 당대의 학자 徐居正은 마침 成均館 知事로 있으므로 유생들의 상소를 만류하였다는 사실이 전한다(「成宗實錄」 권 70, 7년 8월 丙戌조).

8) 成均館의 수난과 관학 교육의 쇠퇴

세종·성종 시대의 文治는 연산군 때에 이르러 수난과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士禍는 국가에서 배양하여 온 인재들을 하루 아침에 탕진 고갈시켰으며 士風은 땅에 떨어지게 하였

다. 연산군 10년(1504) 7월에는 성균관을 등대문 밖 옛 加恩君의 집 터로 옮기고 문묘의 위관과 大成殿·明倫堂·尊經閣 등의 간판을 太平館·掌樂院·西學 등으로 옮겼으며 마침내 성균관은 王臣의 연회 장소와 활터가 되고 말았다. 中宗反正 이후 國學의 부흥책이 강구되었으나 中宗 17년 10월에 史官과 內官을 성균관과 사학에 보내어 점검한 결과 성균관 생원 27명, 寄齋生 78명, 南學 7명, 西學 10명, 東學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退溪 李滉이 大司成이 되었을 때(1550), 그는 師道의 長으로서 날로 폐화되는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하여 특별 담화문(諭四學諸生文)을 발표하였는데 그때의 학교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오늘날의 학교를 살펴 보면 대, 師長이나 학생된 사람이나 서로 그 도리를 잃었다. 학교의 규칙이 謂明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령까지 크게 무너졌다. (...) 유생들이 스승을 보기로 길 가는 사람 보듯하고 학교 보기를 주탁질 보듯하고 (...) 스승이 들어오면 수업을 받고 가르침을 청하기는 고사하고 指하는 예를 행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겨, 서재 안에 반드시 누워서 훈거보고 나오지도 않는다.”

임진왜란(1592)으로 말미암아 성균관과 사학은 모두 불탔고 典祀廳殿이 겨우 남았다(선조 34~39년 사이에 重建됨). 한번 사들어버린 관학 아카데미즘은 16세기 이후 書院을 중심으로 한 사학 아카데미즘으로의 대치를 촉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成均館 교육은 결국 유명무실한 봉건적 교학 정치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할 뿐이었다.

9) 成均館의 近代教育化

개화기에 이루어진 성균관의 제도 개혁은 西勢東漸에 의한 自家刷新의 하나였다. 1887년(고종 24) 7월에 성균관에 經學院이 부설되었다. 그러나 經學院은 초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곧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甲午改革 이듬해인 1895년(고종 32) 7월에 성균관에 經學科가 설치(칙령 제136호)됨으로써 종래의 成均館은 祭享機能을 맡고 經學科는 教育機能을 분담토록

하였던 것이다. 이때 반포된 成均館의 〈官制〉 및 〈經學科規則〉(學部令 第2號)에 의하면 경학과는 ‘學生으로 하여금 經學을 練習하고 德行을 修飾해서 文明한 進步에 注意함을 要旨로 함’(제1조)이라 하면서 교과과정으로는 經學을 위주로 우리나라 및 외국 역사와 地理와 算術과 같은 開化教科目이 부과되었다. 이는 育英公院 이래 국가 공인의 근대 학교 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經學科는 교육의 목적, 교과과정의 운영, 입·퇴학의 절차, 각종 考查 및 學生의 特典, 그리고 휴가와 휴업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벽한 서구식 학교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근대 교육의 표부에 맞게 적응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舊學(經傳學)의 껌질을 벗어나지 못한 교육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經學科 교육에는 교육 제도의 개혁을 통한 開化意志가 맥락이 흐르고 있고, 이는 英·正朝 이래 면면이 훌려 온 실학적 전통과 맥이 닿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朝鮮 왕조가 실질적으로 망한 光武 9년(1905)에 이르러 성균관은 마지막으로 官制의 개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운데 ‘博士’ 제도를 설정한 것이 주목된다. 博士는 經學科 儒生에서 뽑거나 京鄉 각지에서 실시한 經義問對 혹은 時務等에서 뽑힌 사람 또는 각도의 老師宿儒에서 가려 뽑았다(관제의 정원은 3명). 丹齋 申采浩가 成均館의 博士로 재임하면서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한 것은 이 무렵이다.

2. 民立大學 ; 精舍와 書院

1) 사학 아카데미즘

書院의 교육적 성격을 ‘大學’으로 파악한 것은 필자가 처음인 것 같다(丁淳陸, 「韓國書院敎育制度研究」, 嶺大出版部, 1979). 서원(精舍를 포함하여)은 관학의 최고 학부인 성균관 교육의 파탄을 극복하기 위하여 발생하였다. 관학 교육의 학문적 분위기에 대한 반작용에 의하여 설립되었다는 조건 변화보다도 서원 교육이 지니고 있는 교육 정신·교육 내용·교육 형식이 성균관 교육보다는 大學理想과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교육사에서 書院이 鄉

校와 같은 수준으로 부당하게 평가 절하되어 온 것은 시정되어야 할 과제이다。宋代教育史에 있어서도 서원을 ‘大學教育的 最大的 特色’이라고 다른 이웃 나라의 연구(伍振焱, 「中國大學教育發展史」, 臺灣; 三民書局, 1986)는 ‘官院大學論’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서원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과 맞먹는私立大學(院)의 성격과 교육 수준을 가진 것 같다.

뛰어난 학자가 살아 있을 때 講學하던 곳을 糲舍라고 하고 그가 講道하던 곳, 그를 祭享하는 祀豆所를 서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大學水準의 서원은 국가 공인의 賦額書院으로 국한하여 이해할 수 있고, 사액을 받은 곳 가운데서도 하나의 學派形成을 이루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지닌 서원이 곧 官院大學(院)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서원의 발생은 조선 왕조 초기의 교학 정책이 그 한계점에 도달한 데 대한 안티태제로서 또는 教學理念의 전환의 표현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서원의 발생은 조선이 건국된 지 백 수십 년을 지내는 동안 教學理念이 안고 있던 모순을 어떠한 형태로나마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재야의 士林들이 주체가 되어 ‘선비 像의 새로운 定立과 士林의 聰合’을 도모하기 위하여 創出해 낸 교육 기관이다.

따라서 16세기 書院教育運動은 반관학적 교학 이상에 기인한다. 이것은 조선조 교학 체계의 정통성이 관학 아카데미즘으로부터 士林 아카데미즘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적접적으로 촉진시킨 것이 士禍이다.

사화로 말미암아 士林들은 중앙 정계로의 진출이 좌절 또는 봉쇄 당하였으며 선비들은 정치 현실을 기피하고 政教論으로 권력에 부속하던 廟堂儒를 소인이라 하고 그들을 스스로 山林儒라고 하면서 禮教論을 응호하였다. 그러나 벼슬길이 막힌 士林들이 양반 사회에 존속하기 위하여는 ‘道學’이 불가결한 삶의 방식이었다. 士林들의 힘은 훈구 사대부들보다 정치적·경제적으로 약세였으므로 그들의 정치적 입장은 정당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지키자면 필연적으로 연합 세력을 형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16세기(第一

期) 서원은 그 尊祀人物이 이러한 기준 아래 선택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第二·三期)의 書院濫設은 그 기준이 무너진 시기이며 道統 대신에 地緣·學緣·朋緣으로 인물이 선택되던 시기이다. 이것은 國士의 서원 시대가 막을 내리고 鄉士의 서원 시대가 개막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 서원교육의 바른 모습은 아무래도 16세기의 書院教育에서 그 典型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士林精神과 書院教育

퇴계로 비롯되는 書院教育運動은 서원이 선비 정신의 배양지로서 종적으로는 學統의 계승과 발전을 기하고 형적으로 學派의 연계와 유대를 이루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가적 승인이 곧 賦額이다. 서원은 ‘환경의 교육성’이나 ‘교육의 자율성’이 관학보다 우수하였다. 그리고 안으로는 뛰어난 스승이 있고 밖으로는 국가의 보호 육성책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퇴계는 1549년에 白雲洞書院의 사액을 청하고 이듬해에 ‘紹修書院’의 사액을 받음).

퇴계가 書院教育이 중요하다고 본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 ① 教育權의 獨立；학문의 자유
- ② 師道의 擴立；人格教育
- ③ 士氣培養；人間教育

그에 의하면, ‘학교는 풍속·교화의 근원이며, 모범을 세우는 곳이요, 선비는 禮와 義의 주인(宗)이고 元氣가 깃드는 곳’이기 때문에 선비 교육의 요람인 서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書院의 取士制度

서원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 심사를 ‘取士’라고 한다. 서원의 원로 회원인 公事員이 鄉中的 유생 가운데, 나이 30 이상으로 文行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曹司로 하여금 그 이름을 쓰도록 하고 竹箇(또는 콩(可)과 팔(否))을 여러 公事員에게 돌린다. 公事員은 각기 투표를 하여 죽통안에 넣는다. 투표가 끝나면 竹箇을 봉하여 院長에게 보이고 개표한다. 準點(10점)과 參榜(5점)을 가지고 이를 ‘遊院錄(青襟錄이라고도 함)’에 기재한다. 이같은 인선을 거쳐야 모든 서원

행사에 참례한 자격을 얻는다. 이로써 선비는 일상 생활에 몸가짐을 단속할 수 있었으며 鄉風도 깨끗해질 수 있었다. ‘두푼(二分)’ 어치도 못 되는 인간’이란 取士의 점수를 2 표밖에 받지 못한 인간이란 뜻이다. 取士制度는 서원의 사회 교육적 기능이자 鄉黨公論을 여론화하고 의정하는 구실도 겸하였다. 取士는 과거와 같이 子·午·卯·酉年에 해당하는 ‘式年’에 한번씩 하였고 인원은 한번에 15~20명이었으나 때로 가감이 있었다.

4) 書院教育의 여러 모습

① 院號

精舍는 名號이 있는 儒士가 처음부터 초야에 묻혀 있거나, 또는 벼슬을 살다가도 전원으로 돌아와 懿居·藏修의 자리를 열면, 그를 따르는青年學者들이 찾아와 問道·執贊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私塾이다. 따라서 그 명칭은 그 소재지의 지명이나 景勝의 특징, 또는 그 주인의雅號나 趨向하는 바를 따라서擇하였다(예컨대, 퇴계의 ‘陶山書堂’, ‘隨雲精舍’나 율곡의 ‘隱屏精舍’ 따위). 그러나 서원의 명칭은 宋代의 ‘白鹿洞書院’의 故事에 의하여 그 소재지의 지명을 취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나라에서 賦額을 내리고자 할 때는 弘文館의 大提學 또는 副提學과 같은 學者官員이 먼저 그 서원 이름에 알맞은 候補額號 셋을 撰定하여 왕에게 올리고(備三望) 국왕은 이 三望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落點) 명명한다.

② 院址

서원의 자리를 정하는 데는 風光景勝이 뛰어난 곳이거나 先賢이 講道하던 곳이 원칙이다. 先賢講道의 자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춘 곳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겹치는 곳이 많았다. 그리고 書院 자리는 麗末 아래의 废寺趾를 이용한 곳이 많다(紹修書院·玉山書院·迎鳳書院 등).

서원 자리를 정하는 법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기도 한다.

•〈應取風水〉: ‘아름답고 뛰어난 경치를 지니고 있는 곳은 반드시 靈氣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걸출한 인재를 배출할 것이라고 하는’ 風水應

感說이다. 자연적 교육환경론이라고 할 수 있다.

•〈謀合清淨〉: 서원의 布置는 잡다한 民家를 벗어나야 하고 牛馬 소리를 멀리하지 않을 수 없다. 閭巷에서는 潛心讀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위적 교육환경론이다.

③ 學事運營

대체로 院長·有司 제도를 취하는 곳이 많다. 院任의 선출은 민주적인 추천 제도에 의한다. 院長(山長 또는 洞主라고도 함)과는 별도로 교학 담당자인 講長을 따로 두어 經學과 예절에 대한 講問을 담당하기도 한다. 오늘의 教授이다. 訓長은 院儒에 대한 學問 勸勉과 訓導를 담당한다. 오늘의 助教이다. 執綱은 院中의 풍기를 맡는다. 오늘의 학생처장격이다. 齋長은 學生會長격이고 都有司는 사무처장이다. 그밖에 直月은 堂會(儒林會議) 시에 사무를 맡고 直日은 일직 당번이다. 掌議는 院中の大小事를 評議하고 色掌은 幹事격이다. 그러나 丁茶山은 院任들의 人事(差帖)가 격식을 차리지 않고 그저 기둥에다가 성명 삼자만 붙이고 ‘아침에 부쳤다가 저녁에 떼고, 이리저리 옮기는’(朝附夕摘·左攘右奪) 일이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牧民心書」興學에서).

④ 教育課程

서원 입학의 일반적인 수준은 대략 성균관과 같은 것이므로 儒學大學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위, 「韓國書院敎育制度研究」, p. 190)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齋生 가운데는 이미 학문적으로一家를 형성하여 그 수준이 당대의 석학과 강론을 나눌 수 있는 인물이 적지 않았다. 퇴계는 〈伊山院規〉에서 ‘四書五經爲本原·小學家禮爲門戶’라고 하였는데 있는 서원 교육과정의 기본이 되는 지침이었다. 그러나 퇴계 자신은 〈近思錄〉·〈啟蒙〉·〈心經〉 등 고급 교재를 즐겨 강의하였다.

⑤ 教授方法(講)

講이란 배운 글을 소리 높여 외우거나 읽고 그 뜻을 間對하는 전통적 교수 방법이다. ‘강’은 대개 旬講·望講·月講 등으로 나뉜다. 암송하고 난 뒤의 질의 응답은 세미나 형식이다. 講에는 背講과 面講이 있다. 배강은 암송 낭독이고 면강은 臨文 낭독이다. 강은 1대 1의 對面學-

집이기 때문에 능력별 수업이 가능하고 인격적 교류가 전개될 수 있었다. 퇴계를 찾아오는 문도들의 경우를 참고할 것 같으면 그들은 이미 일가를 형성한 유명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지식의 전달을 하자는 아니하였다. 그 가운데는 간혹 10대의 초학자들도 있었으나 그들 역시 <퇴계 교실>에 입문할 정도이면 당대의 수재들이었다. 따라서 퇴계의 교육 방법은 교재 중심이 아니라 주제 중심이었고, 강의 형식이 아니라 토론 형식이었다. 교육의 장소는 도산서당이나 易東書院에서 <心經>·<啓蒙>·<近思錄>에 대한 특별 강의가 자주 있었지만, 오히려 수시 수처에서 비유와 경험 전달을 통한 간접적인 계발 방식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오늘날 말하는 ‘대화교육’이 특색이었다(丁淳薩, 「退溪評傳」, 지식산업사, 1987, p. 140).

⑥ 教育評價(出席·學業)

서원에서는 成均館과 같은 四點制度는 없었다. 그러나 물자 결약과 수량을 알기 위하여 <食堂錄>이 있었다. 학업 평가는 번거로운 ‘學侖’의 구에는 없었으나 考課評定의 五段階(大通·通·略·粗·不) 또는 3 단계(通·略·粗) 평가 척도는 성균관과 같다.

⑦ 입학 자격 및 정원

入院 자격은 取士될 만한 儒生이면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生員·進士를 대상으로 한 것 같다. 明宗 때 洪遁이 上奏하기를 ‘非初試入格者 則不許’ 하라고 하였으며(「明宗實錄」 권20, 10년 正月 壬午) 白雲洞書院을 비롯하여 많은 서원들이 進士·生員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初試入格者라도 향학심과 조행이 있는 자로서 入齋를 원하면 有司가 승인을 받아 허락한다고 하였다. 紹修書院과 西岳書院의 경우에는 그 院規에 그 고을 수령의 자제는 서원에 체류하거나 서책을 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원의 개입으로 인한 서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서원이 定員은 처음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이 墓田의 규모에 의하여 정하였다. 그러다가 仁祖 32년에 서원 원생에 대한 정원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書院 남설·첩설의 전성 시대인 숙종 36년(1710)에 齋生數를 확정하였다.

- 사액 서원 : 20명

- 문묘 종사 유현 서원 : 30명(뒤에 20명으로 삭감)

- 미사액 서원 : 15명

⑧ 教育財政·奴婢

書院經濟의 주축은 俗院田이다. 「續六典」에 의하면 사액 서원은 3結을 국가에서 지급(自辦도 인정)하였는데, 사액 서원의 시초인 紹修書院이 국가로부터 서적·전토·노비 등을 하사받음으로써 常例가 되었다. 그러나 실지로 소수 서원은 30結 이상의 院田을 설립초부터 領有하였다. 陶山書院 역시 설립 초기에 6結 15負 3束 1斗落이나 되었다. 여기에 기부받는 願入田과 力役의 면제를 조건으로 하여 바치는 免役田, 그리고 寺院經濟의 書院移屬인 寺刹位田 및 官의 조치로 서원으로 이속된 屬公田 등이 있었다.

院奴의 定額은 서원의 설립 초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道峯書院에는 30인, 仁賢書院에는 70인이나 있었다. 그러나 孝宗 8년에 忠淸監司 徐必遠의 장계에 따라 국가 규정의 서원 노비의 정액이 마련되었다.

- 사액 서원 : 7인

- 미사액 서원 : 5인

- 鄉賢祠 : 1인

그러나 이같은 규정도 肅宗年間에 이르면 定額이 지켜지지 않아서 한 서원의 노비가 백 명이 넘는 곳이 많았다. 軍役을 피하려는 鄉民이 投屬하는 경우와 奴婢從母法으로 자연 증가하는 경우가 원인이다. 당시의 노비는 田 2結과 맞먹는 귀중한 私有財產이다. 그들은 身役(內居)과 身貢(外居)을 바쳐가며 허망한 삶을 유지하였다(다음 호에 계속). *